[]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(변경신고)서 []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즉시
1. 신고인 기본사항				
①법 인 명			②사업자등록번호	
③대 표 자 성 명			④전 화 번 호	5
⑤본 점 소 재 지				
2. 신고내용				
① 평가(계산)방법 기본사항				
⑥사업개시일(연월일)			⑦변경 방법적 등 개 시 사 업 연 년 (연월일)	용 고
⑧변경사유				
⑨변경사업장소재지				
⑩동일종목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				
② 평가방법 신고(변경) 내역				
재고자산의 종류		평 가 방 법(변 경 전)	<u> </u>	영 가 방 법(변 경 후)
⑪상 품 및 제	품			
⑫반 제 품 및 재 공	품			
③원 재	료			
⑭저 장	품			
⑤위 에 준 하 는 자 산				
(4)채 (16)유 가 증 권	권			
ゆ	타	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제3항·제6항,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(변경 신고)서,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제3항·제6항,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(변경신고)하거나 「법인세법 시형령」 제113조제7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.
- 2.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서 :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
- 나.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: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
- 다.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: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
- 3. ⑨번란에는 본점이외의 사업장(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종사업장 포함)의 평가방법을 변경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4. ⑩번란에는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적습니다.
- 5. ② 평가방법 변경 내역란에는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시 적용(변경신고 포함)받을 방법을 적습니다.